

인천광역시 각급 학교 체육시설 등의 확보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각급 학교 체육시설 등의 확보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10월 1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가. 각급 학교의 체육장(옥외체육장) 기준면적이 관계 법령 등의 개정으로 대폭 축소되면서, 현재 최소 기준면적의 체육장(옥외체육장) 부지만을 확보한 채 학교가 신설되고 있어 체육장이 매우 협소한 실정임

나. 이러한 각급 학교의 협소한 체육장이 학생들의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 발달을 저해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여 학생들의 원활한 체육수업과 활발한 신체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각급 학교 체육시설 등의 확보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감과 각급 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 등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함(안 제4조)

나. 교육감은 체육시설 등의 확보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다. 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체육장 면적을 학교설립·운영 규정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면적 이상을 확보하여야 함(안 제6조)

라. 교육감은 매년 각급 학교의 학교 체육시설 및 체육기자재 등의 구비 현황과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문제가 있는 학교의 경우 학교장에게 학교 체육시설 및 체육기자재 등의 확충 계획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을 요구하여야 함(안 제7조)

마. 교육감은 체육시설 등이 없거나 부족한 각급 학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0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장(참조 : 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62, 팩스 032-440-8784, 이메일 : bks324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붙임자료

- 인천광역시 각급 학교 체육시설 등의 확보 및 지원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각급 학교 체육시설 등의 확보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들의 원활한 체육수업과 활발한 신체 활동을 위하여 각급 학교 체육시설 등의 확보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기초체력 향상과 육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말한다.
2. “체육시설 등”이란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위한 체육장, 학교 체육시설, 체육기자재 등을 말한다.
3. “체육장”이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이하 “학교설립·운영 규정”이라 한다) 제5조와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령」 제2조제3항에 따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옥외체육장(운동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4. “학교 체육시설”이란 「학교체육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시설 중 학교설립·운영 규정 제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

5. “체육기자재 등”이란 학교설립·운영 규정 제8조에 따라 교육감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체육시설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교육감과 각급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생들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각급 학교의 체육시설 등이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체육장 기준면적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교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신설·재배치 또는 증축 사업 시행 시 체육장 및 학교 체육시설과 그에 따른 모든 시설들을 우선적으로 갖추도록 권고하고, 이행 여부에 대한 지도·감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과 학교장은 체육시설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과 학교장은 체육시설 등의 확보 및 실태조사,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노력하며, 그 밖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계획(이하 “학교체육 진흥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체육시설 등의 확보 현황, 안전실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체육시설 등이 부족한 학교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부족한 체육시설 등의 확보를 위해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체육장의 설치 기준) 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체육장 면적을 학교설립·운영 규정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면적 이상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학교 체육시설 및 체육기자재 구비 현황 등 점검)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학교 체육시설 및 체육기자재 등이 학교설립·운영 규정 제8조에 따라 고시한 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와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학교 체육시설 및 체육기자재 등이 부족한 학교와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는 학교의 경우 교육감은 해당 학교장에게 학교 체육시설 및 체육기자재 등의 확충 계획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별도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제8조(학교·지역사회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체육시설 등이 없거나 부족하여 체육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각급 학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해당 교육지원청 및 학교, 지역사회 등과 협력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학교체육 진흥법 제4조(기본 시책의 수립 등) 제7조(학교 체육시설 설치 등) 제15조(경비의 지원 및 보조) ▣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학교 체육시설의 종류)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정의)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5조(체육장) 및 제8조(교구) ▣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2조(교지)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관련자료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

□ 「학교체육 진흥법」

제4조(기본 시책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1항의 기본 시책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학교 체육시설 설치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운동장, 체육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체육활동 진흥에 필요한 체육 교재 및 기자재, 용품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활동 기반시설 확충과 제2항에 따른 체육 교재 및 기자재, 용품 등의 확보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경비의 지원 및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학교 체육시설의 종류) ① 「학교체육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학생의 체육활동 진흥에 필요한 체육 교재 및 기자재, 용품 등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별표 1] <개정 2013.3.23>

학교체육시설의 종류 (제2조제1항 관련)

구분	학교체육시설의 종류
운동 종목별 시설	1. 골프연습장 2. 궁도장 3. 게이트볼장 4. 농구장 5. 당구장 6. 라켓볼장 7. 럭비풋볼장 8. 롤러스케이트장 9. 배구장 10. 배드민턴장 11. 볼링장 12. 빙상장 13. 사격장 14. 세팍타크로장 15. 수영장 16. 스쿼시장 17. 승마장 18. 썰매장 19. 씨름장 20. 아이스하키장 21. 야구장 22. 양궁장 23. 역도장 24. 에어로빅장 25. 요트장 26. 육상장 27. 조정장

구분	학교체육시설의 종류
	28. 체력단련장 29. 체육도장 30. 체조장 31. 축구장 32. 카누장 33. 탁구장 34. 테니스장 35. 펜싱장 36. 하키장 37. 핸드볼장 38. 인공암벽등반장 39. 그 밖에 교육과정에 필요한 운동 종목의 시설로서 교육 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그 밖의 시설	1. <u>운동장</u> 2. 체육관 3. 샤워장, 탈의실 등 부대시설

[별표 2]

체육 교재 및 기자재, 용품 등의 종류 (제2조제2항 관련)

구분	체육 교재 및 기자재, 용품 등의 종류
1. 체육 교재	1. 교과서 2. 교사용 지도서 등
2. 체력 측정	1. 초시계 2. 줄자 3. 러버콘(고무로 만든 원뿔) 4. 반환점 5. 디지털 악력계 6. 좌전굴 측정기 7. 스텝박스 8. 팔굽혀펴기대 9. 시디플레이어 및 앰프 등

구분	체육 교재 및 기자재, 용품 등의 종류
3. 육상 운동	1. 스타팅블록 2. 허들 3. 신호총 4. 높이뛰기대(가로대 포함), 높이뛰기 매트 5. 멀리뛰기용 구름판 6. 원반 7. 포환 8. 던지기 공 9. 줄긋기 기구 10. 배턴 등
4. 구기 운동	1. 축구공 2. 농구공 3. 배구공 4. 소프트발리볼 공 5. 핸드볼공 6. 야구장갑, 야구공, 플라스틱 방망이, 베이스 세트, 포수 보호구(마스크, 프로텍터 등) 7. 셔틀콕, 배드민턴 라켓, 배드민턴 네트 8. 탁구공, 탁구 라켓, 탁구 네트, 탁구대 9. 점수판 10. 공기주입용 펌프 11. 모뎀조끼 등
5. 체조 운동	1. 리듬체조용 줄 2. 리듬체조용 고무공 3. 후프 4. 곤봉 5. 리본 6. 음악줄넘기용 줄 7. 긴 줄넘기 줄 8. 체조용 매트 9. 평균대 10. 뿔들 11. 구름판 등
6. 그 밖의 운동	1. 줄다리기용 줄 2. 제기 3. 투호용구 세트 4. 굴렁쇠 5. 살바 6. 부메랑 7. 플라이딩디스크 등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교사대지(校舍垞地)·체육장 및 실습지

나. 교사·체육관·기숙사 및 급식시설

다. 그 밖에 학습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학교시설사업"이란 학교시설을 설치·이전하거나 확장하는 사업을 말한다.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5조(체육장) ① 각급학교의 체육장(옥외체육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배수가 잘 되거나 배수시설을 갖춘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장의 기준면적은 별표 2와 같다.

③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교육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장을 두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장의 기준면적을 완화하여 인가할 수 있다.

1. 새로이 설립되는 각급학교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체육장 또는 공공체육시설 등과 인접하여 공동사용이 용이한 경우

2. 도심지 및 도서·벽지 등 지역의 여건상 기준면적 규모의 체육장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3. 삭제 <2001.10.31.>

제8조(교구) ① 각급학교에는 학과 또는 교과별로 필요한 도서·기계·기구

등의 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구의 종목 및 기준은 시·도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2] <개정 2007.5.2>

체육장의 기준면적(제5조제2항 관련)

(단위 : m²)

학 교	학생수별 기준면적		
	40명이하	41명이상	
유 치 원	160	120+N	
초등학교·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600명이하	601명이상 1,800명이하	1,801명이상
	3,000	1,800+2N	3,600+N
중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600명이하	601명이상 1,800명이하	1,801명이상
	4,200	3,000+2N	4,800+N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600명이하	601명이상 1,800명이하	1,801명이상
	4,800	3,600+2N	5,400+N

비 고

1. N은 각급학교의 전학년의 학생정원을 말한다.
2. 교내에 수영장·체육관·강당·무용실 등 실내체육시설이 있는 경우 실내체육시설 바닥면적의 2배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3.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운영학교 및 동일구내에 2이상의 각급학교가 위치하는 경우에는 각 학교 급별 기준면적을 합한 면적을 적용한다.
4. 주간수업과 야간수업을 겸하여 행하는 학교에 대하여는 그중 인가학생정원이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2조 (교지) ① 학교의 교지는 교사용 대지와 체육장용 대지를 합한 용지로서 교사의 안전·방음·환기·채광·소방·배수 및 학생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입지이어야 한다.

② 교지의 기준면적은 학급수 12학급까지는 4천제곱미터로 하고, 12학급 초과 24학급까지는 그 초과하는 1학급당 300제곱미터씩을, 24학급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1학급당 200제곱미터씩을 가산한 면적으로 한다. 다만, 유치부만을 설치·운영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교사에 두는 시설 및 유원장을 확보하는데 지장이 없는 면적으로 한다.

③ 학교에는 학생의 체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체육장(유치부만을 설치·운영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유원장)을 두되, 그 시설·설비기준은 특별시·광역시·도교육감(이하 "시·도교육감"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다만, 유치부만을 설치·운영하는 학교에 유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유원장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교지의 기준면적을 확보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고, 교육에 지장이 없다고 관할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면적의 3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감축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조례안은 학생들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 등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확보하고, 체육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의 체육시설 보유현황에 따라 예산이 수반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학교의 체육시설 보유현황에 따라 예산지원이 달라져 비용의 정확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교육위원회 이 강 호 의원